

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2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17일

3. 제안이유

관계법령의 개폐 및 위원회 통·폐합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위원회 결정사항중 관계법령의 개폐 또는 유사위원회 기능의 통합에 따라 항목은 추가·삭제하고 별표로 분리된 위원회 기능을 본문의 결정사항에 포함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

<소멸·중복기능 삭제 >

- 10억원이상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결정기능 삭제
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중복)
- 유통산업 근대화시책 심의기능 삭제(관련법령 폐지)
- 화전정리 심의기능 삭제(기능소멸, 법령폐지 계류중)

<신규기능 추가>

- 행정규제 심사기능 추가(행정규제기본법 신설)
- 민원조정기능 추가(민원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른 기능이관)
-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기능 추가
(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기능이관)
- 보안심사 및 공무원국외여행 심사기능 추가
(위원회 기능대행)

○ 자구의 일부수정

- 기획관리실 → 기획조정실, 업무담당사무관 → 기획담당사무관
- 도조정위원회 → 도정조정위원회

○ 간사장과 간사의 의미가 명확치 않아 간사로 통일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·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기능의 중복·소멸된 10억이상 소요예산사업의 투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과 유통산업 근대화 추진을 위한 시책등의 심의 및 화전정리 심의기능은 삭제하였고 공무원 국외훈련 및 공무국외여행심사, 민원조정 및 보안심사,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등에 관련사항은 새로 신설하였으며

또한 도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, 업무담당사무관을 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하는등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

○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